

1.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「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총리령 제 호

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

「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제2항 전단 중 “기획재정부차관”을 “재정경제부차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(갈등관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	제15조(갈등관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,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, 교육부차관, 국방부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 문화체육관광부차관, 농림축산식품부차관, 산업통상부차관, 보건복지부차관,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, 고용노동부차관, 성평등가족부차관, 국토교통부차관, 해양수산부차관,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, 소방청장, 국가유산청장, 산림청장,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부처 또는 청의 차관, 차장 또는 청장이 된다.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	② ----- ----- <u>재정경제부차관</u> -----.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